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2766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가. 원고 : 피고는 소외 E 사이에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2017. 7.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20,603,6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20,60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 위

가.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3. 25.자 및 2016. 2. 19.자로 H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H 주식회사는 2018. 3. 15.자로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20. 10. 30.기준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603,620원이다.

나. E에게는 가족으로 아버지 I, 어머니 원고, 형제 J, D, K가 있었는데, 2017. 7. 23. I이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8. 8. 이 사건 빌라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라고 한다), 2017. 8. 10.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1. 1. 20.자로 위 대출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E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대출채권 원리금 20,603,620원 가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E이 H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는 전용면적이 63.80㎡ 정도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과 1964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2년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약 15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9,12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점, ④ 상속인 중 K만 제외하고 E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이 분가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피고가 오랜 기간 자녀들을 부양하였고, 피고가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어 남은 여생을 이 사건 빌라에서 보내라는 의미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와 같이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보이는 점, ⑦ E만이 아닌 다른 자녀들 모두 이 사건 빌라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 ⑧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빌라 외에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록 상속인들이 이 사건 빌라를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L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